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수교육교원 확보를 위한 시책 마련 등〉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437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문근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특수교육교원 확보를 위한 시책 마련 등	2
2. 개정안 부칙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희용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4. 20.

3. 회 부 일 : 2026. 4.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육교원 1인이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다수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담당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원의 업무 과중, 특수교육의 질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27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특수교육교원 확보를 위한 시책 마련 등(안 제5조제1항제5호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업무로 특수교육교원의 확보를 추가하고(안 제5조제1항제5호),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국가등은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4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특수교육교원의 <u>양성</u> 및 연수	5. ----- <u>양성·확보</u> -----

6. ~ 1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 ③ (생 략) <u><신 설></u>	6.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3항에 따른 특수교육교원의 배 치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특 수교육교원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u>
---	--

나. 검토의견

- 특수교육교원은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으로¹⁾, 현행법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²⁾
- 이에 따라 법 시행령에서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³⁾.

□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공립 특수교육교원 현황⁴⁾을 보면, 특수교육교원의 법정정원 대비 배정정원의 비율이 2022년 91.7%에서 2026년 80.5%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당국은 매년 심화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4) 국립 특수교육교원의 경우 2026년 법정정원(293명) 대비 배정정원(385명)이 더 많이 배치되어 있고, 사립의 경우 법정정원(3,184명) 대비 현원(4,081명)이 더 많이 채용되어 있음.

[국립 특수교육교원 현황(2024년~2026년)]

(단위: 명)

구 분	2024	2025	2026
특수교육대상자 수①	1,058	1,138	1,172
특수교육교원 법정정원(A)②	265	285	293
특수교육교원 배정정원(B)③	378	378	385
B/A	142.9	132.9	131.4
특수교육교원 현원(C)	362	377	387
C/A	136.9	132.5	132.1

① 국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 수

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 학생 4명마다 교사 1명

③ 교육부에서 각급학교로 배정한 인원으로 국립 특수학교(급)에 배치된 특수교육교원

※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은 50% 범위 이내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국·공·사립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대부분인 특수학교에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있음

[사립 특수교육교원 현황(2024년~2026년)]

(단위: 명)

구 분	2024	2025	2026
특수교육대상자 수①	12,174	12,450	12,735
특수교육교원 법정정원(A)②	3,044	3,113	3,184
특수교육교원 현원(B)③	4,093	3,990	4,081
B/A	134.5	128.2	128.2

① 사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 수

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 학생 4명마다 교사 1명

③ 사립 특수학교(급)에 배치된 특수교육교원 현원 기준

되고 있는 특수교육교원의 구조적 부족 문제를 기간제교사 배치를 통해 해소하고 있는 실정임.

[공립 특수교육교원 현황(2022년~2026년)]

(단위: 명)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특수교육대상자 수 ^①	73,032	77,914	82,729	87,317	90,838
특수교육교원 법정정원(A) ^②	18,258	19,479	20,683	21,830	22,709
특수교육교원 배정정원(B) ^③	16,737	16,795	17,161	17,625	18,281
B/A	91.7	86.2	83.0	80.7	80.5
특수교육교원 현원(C)*	18,929	19,360	20,614	21,769	23,040
C/A	103.7	99.4	99.7	99.7	101.5

자료 : 교육부

①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공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 수

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 학생 4명마다 교사 1명

③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실제 배정한 인원으로서 특수학교(급)에 배치된 특수교사에 한함(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는 제외)

□ 발달지체 및 자폐성장애 학생의 증가,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 통합교육에 따른 일반학교 일반학급 배치 증가로 특수교육대상자는 계속해서 증가⁵⁾하고 있어 특수교육교원의 법정정원도 증가하고 있는바, 교육부는 이를 반영하여 매년 특수교육교원의 배정정원을 관계부처(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으나 공립 특수교육교원의 경우 법정정원 보다 부족하게 확보되고 있는 상황임.⁶⁾

5) 동 요인들은 내적 요인으로, 외적 요인의 경우 **사회환경 요인**(초혼연령, 첫째아 어머니의 평균 출산연령, 합계출산율), **건강에 대한 관심과 태도 변화 요인**(건강검진 수검자 비율 등), **일반 학생의 특성 요인**(다문화 학생 수, 건강 이상 아동 비율 등), **특수교육 연건 변화 요인**(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수, 총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 비율, 치료지원 이용 학생 비율 등),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요인**(장애이해교육 실시 비율 등),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관련 요인**(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 및 선정 등)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남(특수교육대상자 증가 요인 분석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2024).

□ 현재 특수교육교원 법정정원의 기준이 되는 배치기준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특수교육교원 확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업무로 규정하면서,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하는바,

법정 정원 확보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보다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육교원의 배정 정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2025년도 기준 공립 특수교육교원 법정 정원 대비 배정 정원 부족 인원이 4,205명인바, 개정안의 경우 인력 충원 가능성 및 충원되는 인원의 향후 재정 소요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 관련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 신중검토

- 특수교육교원의 확보만을 별도의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법체계 등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교원 확보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화의 경우 배치기준 충족을 위한 정원 확보에 대한 의무 조항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정원 확보를 법적 의무로 강제할 것으로 보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6) 사립학교의 경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법정 채용인원은 국공립과 동일하게 특수교육대상자 4인당 1인이나, 사립 특수교육교원은 정원 확보 후 배정된 교원을 교육청에서 배치하는 구조가 아닌 사립학교 법인의 개별 채용으로 이루어짐.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안 부칙은 개정안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의 경우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에 맞는 교원의 정원 확보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정 마련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바,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6